

인천지방법원 2010. 11. 4 선고 2010가합6624 판결 [임차권확인]

전 문

원고 ○○○ (0000000-00000000)

인천 남구

송달장소 인천 남구

피고 ○○○ (0000000-00000000)

부천시 원미구

송달장소 인천 남동구

변론종결 무변론

판결선고 2010. 11. 4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김도연 판사 이소민

별지

1. 부 동 산 표 시

인천 남동구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컨벤션웨딩부페 사진(결혼식, 웨딩리허설, 돌, 회갑, 고회잔치 등의 사진) 부분

2. 임대차계약의 내용

○ 임대인 : 피고

○ 임차인 : 원고

○ 임대차보증금 : 1억 5,000만 원

○ 임대차 기간 : 2008. 9. 27.부터 2010. 9. 26.까지. 끝.

청구원인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 ○○○와 "인천 남동구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cs컨벤션웨딩부페"의 ○○○컨벤션웨딩부페의 사진(결혼식, 웨딩리허설, 돌, 회갑, 고회잔치등의 사진)부분에 대하여 임대기간 2008. 9. 27.부터 2010. 9. 26.까지 임대보증금 금 150,000,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나.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거래를 하여 왔으나, 피고 ○○○가 컨벤션웨딩부페의 운영난을 이유로 피고 ○○○에게 위 컨벤션웨딩부페를 양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

다. 그런데 위 컨벤션웨딩부페의 사진부분이 고객들이 직접 이벤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,

이벤트업체에서 피고 ○○○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지급받는 금액에서 원고에게 금원을 금 30만원씩을 지급받아왔는데,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인수업자인 피고 ○○○이 이벤트업체도 있고, 임차인인 원고도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진임대업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.

라. 그런데 인수업자인 피고 ○○○이가 전 운영자인 피고 ○○○에게 확인을 하면 되는데, 피고 ○○○가 운영난을 이유로 채권에 갈음하여 위 컨벤션웨딩부페를 양도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 ○○○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방법이 불분명합니다.

2. 결론

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컨벤션웨딩부페의 사진부분의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건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